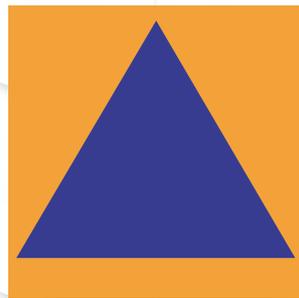


도쿄도 기타구 국민보호계획

(개요판)

기타구에서는 2007년2월에 무력공격사태에 대비한 국민보호 관련 법률(국민보호법) 제35조에 의거 [동경도기타구국민보호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3월에 동경도국민보호계획이 변경함에 따라 동경도기타구국민보호계획을 새로이 실행 2017년2월에 계획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 동경도기타구국민보호계획 주요 변경점

- 국가가 정한[국민보호에 관련한 기본지침]겸[동경도국민보호계획]변경등에 따른다.
 - 새로운 경보전달수단으로써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겸 긴급정보네트 워크시스템을 추가
 - 안부정보의 수집,제공에 총무성(소방청)이 운영하는 안부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추가
 - 국가기관의 현지대책본부장이 개최하는 무력공격사태등 합동대책협의회 출석을 추가
 - 관계법령등 개정에 따른 수정
- 구조직개정등에 따른 변경 또는 표기의 수정
 - 피난처의 개설,운영에 관련된 여성이나 요원호대상자의 시점을 배려한 피난처운영에 관한 기술을 표기
 - 구의 조직개정에 따른 정리[국민보호대책본부]의 부의명칭,분장사무의 수정등
- 통계수치의수정등 . 통계자료의 시점수정등에 따른 수치의 변경



도쿄도 기타구

(2017년2월 변경)

도쿄 도 기타 구 국민보호계획이란

기타 구(北区) 국민보호계획은 외국으로부터의 무력 공격이나 대규모 테러 등이 발생했을 때 구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区)가 취해야 할 행동(국민보호조치)이나 실시방법, 체제 등을 사전에 정한 것입니다. 작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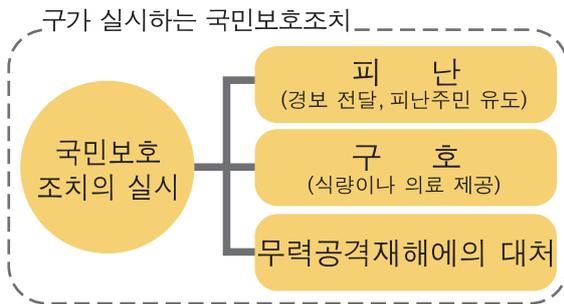
- 기타 구의 특성이나 실효성을 고려한다
- 재해대책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다

· 차후 이곳 기타구국민보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처메뉴얼을 정리하고 훈련의 실시등을 거듭함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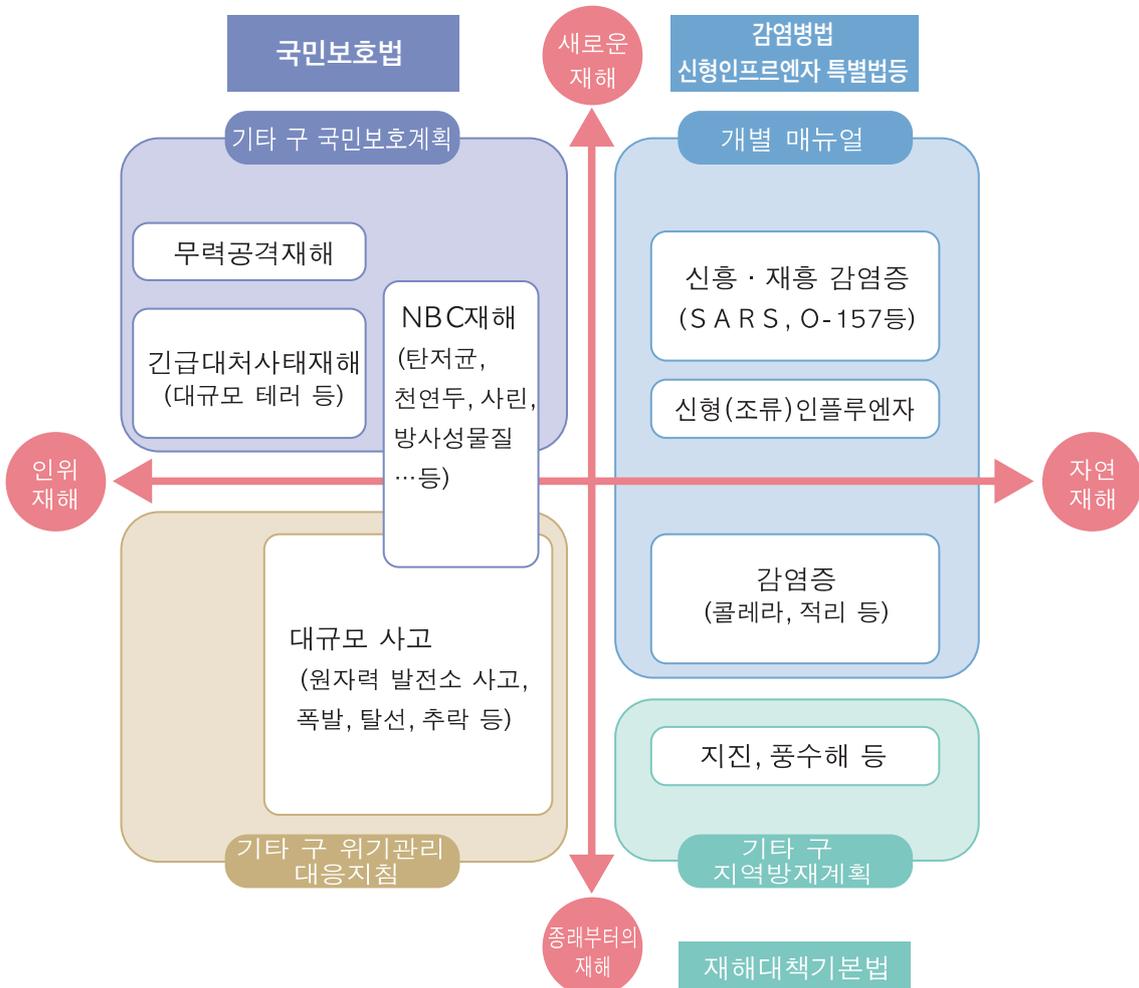
기타 구(北区) 국민보호계획은 하기와 같이 5편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타 구 홈페이지(전부 다운로드 가능)나 구립 도서관, 구정(区政) 자료실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편 총론
- 제2편 평상시 준비
- 제3편 무력공격사태 등에의 대처
- 제4편 복구 등
- 제5편 대규모 테러 등(긴급대처사태)에의 대처



■ 재해의 유형과 관련법제(참고)



제1편

총론

제1편 계획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방침 ■

- (1)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 (2) 국민의 권리의익의 신속한 구제
- (3)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 (4) 관계기관의 상호연대협력의 확보
- (5) 국민의 협력
- (6) 고령자, 장애인 등에의 배려 및 국제인도법의 정확한 실시
- (7) 지정 공공기관 및 지정 지방공공기관의 자주성 존중
- (8) 국민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자들의 안전확보
- (9) 외국인에게 국민보호조치의 적용

■ 상정(想定)되는 사태 ■

【무력공격사태】

- ① 상륙 침투 ② 게릴라·특수부대의 공격
- ③ 탄도미사일 공격 ④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

【긴급대처사태(대규모 테러 등)】

- ① 위험물질이 있는 시설에의 공격
(가스저장시설 등)
- ② 대규모 집객시설 등에의 공격
(역, 열차, 극장 등)
- ③ 대량살상물질에 의한 공격
(탄저균, 사린 등)
- ④ 교통기관을 파괴수단으로 한 공격
(항공기에 의한 자폭테러 등)

※ 상정되는 8개의 사태에 대해 NBC공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N:핵 (물질) Nuclear

B:생물제 Biological

C:화학제 Chemical

제2편

평상시 준비

제2편 국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평상시 체제 구축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조직체제의 정비

무력공격이나 테러 등이 발생했을 때의 초동체제나 직원참가의 기준, 국가나 도(都), 구(区), 지방자치단체, 지정 공공기관 등과의 연대,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 체제, 특수 마크의 교부, 직원의 연수나 훈련 실시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피난, 구호 및 무력공격재해에의 대처에 관한 평상시 준비

피난이나 구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운송사업자의 수송력 등의 파악, 도(都)가 실시하는 피난시설 지정에의 협력, 생활관련시설 파악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정비

물자 등에 관해서는 재난 예방을 위한 비축을 활용함과 동시에 국민보호조치에 특유한 물자(방호복, 약제, 검지기 등)는 도(都) 등의 관계기관의 정비상황에 입각하여 조달합니다.

■ 국민보호에 관한 계발

무력공격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사태발생시에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며, 국민보호법에 관련된 정보나 취해야할 행동의내용 안내문을 활용하고 보급,계발활동을 합니다.

제3편

무력공격사태 등への 대처 (피난, 구호, 무력공격재해への 대처)

제 3편 무력공격사태 등への 대처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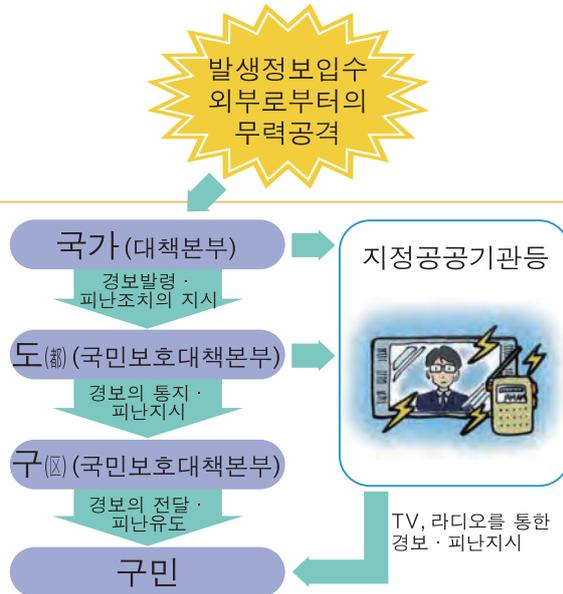
체제의 확립

기타 구 국민보호대책본부(본부장:구청장)를 설치하여 구민의 피난유도나 구호, 무력공격재해의 최소화 등 국민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보·피난 지시의 전달

국가로부터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의 전달방법

- 무력공격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기타 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방재행정무선을 통해서 최대 음량으로 사이렌을 울린 후, 음성방송을 실시합니다.
- 무력공격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기타 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방재행정무선을 통해서 음성방송을 실시합니다.



경보(사이렌소리)가 울렸을 때의 대처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십시오.

① 옥외에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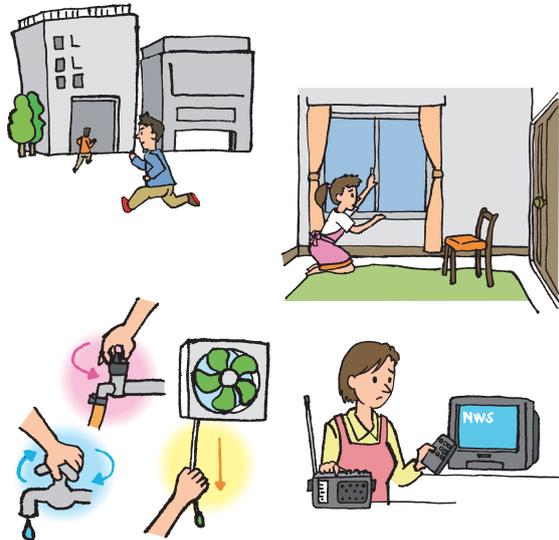
근처 빌딩 등 견고한 건물 내로 대피하십시오.

② 옥내에 있는 경우

- 문이나 창문을 전부 닫고, 환기 팬이나 가스를 잠그십시오.
- 문이나 창문으로부터 떨어질 장소에 대피하십시오.

③ 옥내에 대피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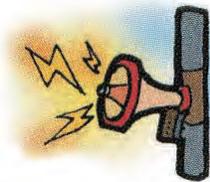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해 어떤 일이, 어디에서 발생하고(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경보의 내용을 전달할 때에 울리는 사이렌소리는 하기의 국민보호 포털사이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보호 포털사이트《내각관방(内閣官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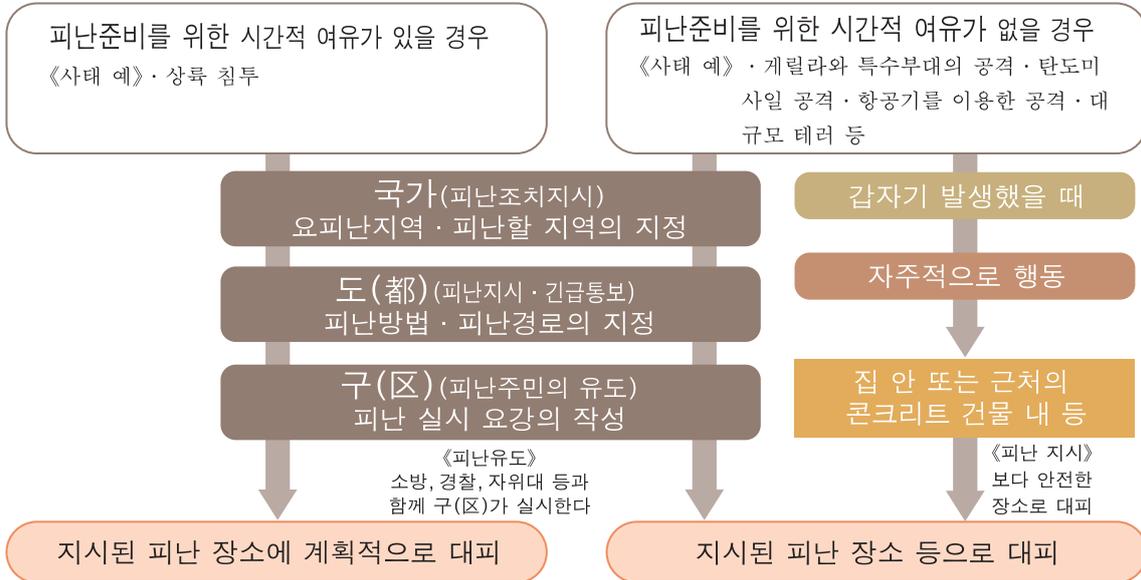
<http://www.kokuminhogo.go.jp/>



피난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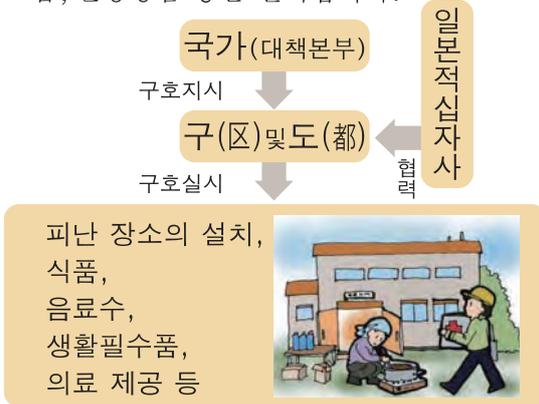
구청장은 도(都)로부터의 피난지시에 따라 피난실시요강을 작성하고, 피난을 유도합니다. 피난지시내용은 발생사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피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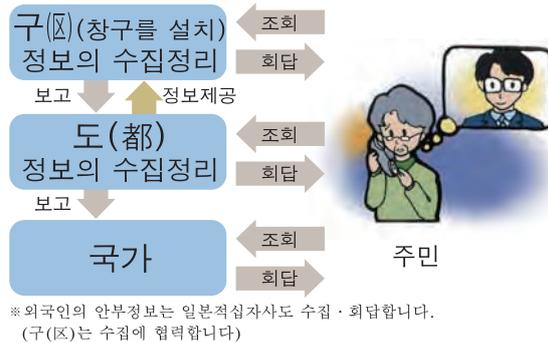
피난 주민의 구호

구(区)는 도(都)와 협력해서 역할을 분담하여 피난 장소의 설치, 식량이나 물 공급, 건강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안부정보의 수집·제공

피난 장소 등에서 수집한 안부정보에 대해서 구민으로부터의 조회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합니다.



● 피난 방법에 대해서

피난 지시는 발생 사태에 따라 실내로 긴급대피, 구(区)내나 도(都)내, 도외의 피난 장소로의 대피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 확인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해 주십시오.
※ 피난을 유도할 때는 요원호대상자를 배려하여 우선적으로 대피, 교통수단 확보에 힘씁니다.

● 피난 지시가 있을 때

- 피난 시에는 귀중품이나 신분증(안부확인용 조회할 때 필요)등을 가지고 가십시오.
- 자택에서 대피할 때는 가스 등의 밸브를 잠그고, 전기 회로 차단기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 이웃사람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응급조치

◇피난지시·경계구역의 설정
위험한 구역으로부터의 대피나 출입을 제한합니다.

◇사전조치·응급공용부담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 시설물 등을 사용·수용합니다.



NBC공격으로 인한 재해에의 대처

NBC오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 제한이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생활관련등시설의 안전확보

◇생활관련등시설

안전에 관한 정보, 시설의 대응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위험물질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험물질의 취급자에 대해서 경비 강화 등을 요구합니다.



재난정보의 수집 및 보고

무력공격재해의 발생일시, 발생장소 및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경찰서·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수집합니다. 수집한 정보는 도(都)에 보고합니다.

보건위생의 확보, 그외 조치

◇보건위생대책

피난소등에서 피난주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건강상담, 식품위생관리등을 실시합니다.

◇폐기물처리

무력공격재해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합니다.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조치

◇재난아동학생에 대한 교육

피난장소에서의 학습기회확보를 위해 교과서 공급 등을 실시합니다.

◇조세등의 감면

재해 상황에 따라 피난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률 및 조례에 입각하여 구(区)세금의 감면 등을 실시합니다.

제 4 편 복구 등

제 4 편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구(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재난의 **확대** 를 막고 이재민의 생활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복구합니다.

◇통신기기

관계기관 들과의 연락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복구를 실시합니다.



무력공격재해의 복구

본격적인 복구는 국가가 시행하는 재정 조치나 법제의 정비, 방침에 입각하여 도(都)와 연계하여 실시합니다.

국민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지급 등

토지 등의 일부 사용에 의한 행정처분의 결과로 생긴 손실이나 국민보호조치의 실시에 대해 협력을 요청 받은 자가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제 5 편

대규모 테러 등(긴급대처사태)에의 대처

제 5 편 대규모 테러에의 대처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대처

대규모 테러 등은 돌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위기 정보의 수집이나 경계, 초기 동작 대응력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체제의 충실

대규모 집객 시설, 의료기관과의 긴급연락체제를 정비합니다.

◇국민에의 계몽

테러등의 도발이나 수상한물건을 발견시 통보방법등에 따라 주지를 목표로 합니다.

◇훈련실시

도(都), 경찰, 소방, 자위대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테러를 가정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정보전달수단의 확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경보나 피난지시 등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힘씁니다.

발생시 대처

· 무력공격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사태발생시에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며, 국민보호법에 관련된 정보나 취해야할 행동의내용 안내문을 활용하고 보급,계발활동을 합니다.

수상한 물건 등을 발견했을 때는 구청(위기관리과), 경찰, 소방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관리과 전화 3908- 1121 ✳️ 경찰 110번 ✳️ 소방 119번

국민보호에 대한 협조부탁말씀

국민보호조치의 실시에는 구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국민보호법에서는 하기의 4개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구민 여러분들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협력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구(区)는 협력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안전 확보에 충분히 배려합니다.

1. 피난 주민의 유도
2. 피난 주민의 구호
3. 소화, 부상자의 반송, 이재민의 구조, 기타 무력공격재해에의 대처에 관한 조치
4. 보건위생의 확보

용 어 집

【 무 력 공 격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말합니다.

【 무력공격사태 】무력공격이 발생했다(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고 인정되는 사태를 말합니다.

【 긴급대처사태 】무력공격에 준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행위가 발생(발생이 우려가 현저하거나) 사태로,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 경 보 】 무력공격사태 등에 직면하거나 발생한 지역 등에 국가의 대책본부장이 발령하는 것입니다.

【 피 난 지 시 】 국가의 대책본부장의 피난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아서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주요한 피난경로나 교통수단 등의 피난방법을 제시하고 주민에게 실시하는 지시를 말합니다.

【 피난실시요강 】 피난지시를 받아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알립과 동시에 관계기관이 공동인식하에서 피난을 유도하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 요 피 난 지 역 】 주민의 피난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피 난 할 지 역 】 주민의 피난장소가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지정공공기관등 】 일본적십자사 등이나 전기, 가스, 수송, 통신 등의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구역에서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사가 지정하는 것을 지정지방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 생활관련등시설 】 발전소, 정수시설 등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요 원 호 자 】 재난전에 준비, 재난시의 피난행동, 피난후의 생활등 각단계별 특별한 원호대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장애인, 난병환자, 유아, 임산부, 외국인등을 상정합니다.

【 긴 급 통 보 】 무력공격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발령하는 것입니다.

【 피 난 장 소 】 주민이 피난하는 학교, 구민센터,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 대규모 집객시설 】 다수의 주민등이 모이는 터미널역이나 이벤트시설 등을 말합니다.

【 J-ALERT 】 단도미사일정보, 츠나미정보, 긴급지진속보등, 대처할 시간적여유가 없는사태에 관련한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한 국가기관(내각관방, 기상청으로부터 소방청을 경유)에서 발신, 시구정촌의 동보계의 방화행정무선등을 자동기동 함으로써 국가기관에서 주민까지 긴급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시스템.

【 Em-Net 】 관저에서 관계기관으로 긴급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위한 일제동보시스템.

【 안부정보시스템 】 국민보호법에 규정된 안부정보의 수집, 제공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안부정보의[입력][정리][보고]를 포함한[제공] 4가지로 분류합니다.

발 행 도교 도 기타 구
발 행 일 2017년 3월
간행물 등록번호 28-2-062
편 집 기타 구 위기관리과
도교 도 기타 구 오지혼초 1-15-22
전화 03(3908)1121
<http://www.city.kita.tokyo.jp/>